

행위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성명				
	생년월일			전화번호	
	주소				

신청내용	자연공원의 명칭									
	행위의 종류									
	행위장소 및 면적									
	행위기간	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	()일간	
	점용(사용)기간	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	()일간	
	원상복구방법									

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위치도 1부 2. 토지사용승낙서(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. 지적도 및 임야도	

처리절차

[처리기관]

- 국립공원: 기후에너지환경부
- 도립공원: 시·도
- 군립공원: 시·군·구

※ 법 제8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.

